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5. 10 선고 2016가합11587(본소), 2017가합12099(반소) 판결
[주류제조면허 명의변경절차이행 · 부속물매수청구]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9. 10 선고 2019나10908(본소), 2019나10915(반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5. 10 선고 2016가합1158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우리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중섭

변론 종결 2019. 4. 12.

판결 선고 2019. 5.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익산세무서장에게 별지1 탁주제조면허의 취소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반소피고)가 익산세무서장에게 탁주제조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3 목록 기재기계·기구를 각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63,85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父) C은 1993. 12. 7. 익산세무서장으로부터 탁주제조면허를 받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조장(이하 '이 사건 양조장'이라 한다)을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1999. 4. 13. C로부터 탁주제조업을 이어받아 이 사건 양조장에 관한 탁주제조면허를

취득하였고, 위 양조장의 상호를 'E'로 변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별지3 목록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조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6. 원고의 처남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이이 사건 양조장에 관한 탁주제조면허를 취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임차1)한 후 이 사건 양조장을 운영함으로써 주류제조·판매로 인한 영업이익을 취득하되, 원고에게 임대료로 영업이익 중 월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0. 31.에는 원고에게 탁주제조면허,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한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각 서

1 망인은 익산시 G 소재 E의 주류제조면허를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2017. 10. 31.자로 반환(명의신탁계약종료)하기로 한다.

2 위 양조사의 제조·판매에 관한 모든 시설은 계약종료로 반환시 2007. 10. 31. 인수 당시의 상태로 인계한다.

3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양조사의 면허와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세무서에서 2차 경고를 받고 벌금을 낸 경우 등)는 즉시 면허를 반환하기로 함.

4 망인은 신의와 성실로 양조사를 운영하며 인수 당시보다 영업의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5 위 양조사의 주류 제조·판매로 인한 영업이익 중 월 3,000,000원의 임대료를 매월 말일자로 지급하기로 한다.

6 위 명의신탁계약은 2017.10. 31.자로 종료되며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위 제5항을 위반시 그 시점에 반환(계약해지)하기로 특약한다.

7 위 각서는 쌍방 간에 공증을 하기로 했으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증을 하지 않고, 약속 이행을 위반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본 각서를 쓴다.

라. 망인은 2007. 9. 6. 이 사건 양조장에 관한 탁주제조면허를 취득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인도받아 이 사건 양조장을 운영하였다.

마. 망인은 2008. 11.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익산세무서에 탁주제조면허 상속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는 2008. 12. 17. 망인의 탁주제조면허를 승계받아 이 사건 양조장 운영을 위한 별지1 목록 기재 탁주제조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양조장을 운영하였다.

바.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6항에서 정한 약정 종료사유(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탁주제조면허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기구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약정에서 정한 기한 인 2017. 10. 31.까지 이 사건 양조장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자, 원고는 2008. 12. 30.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탁주제조면허사용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각 승계하여 이 사건 양조장을 운영하되, 2017. 10. 31.에는 원고에게 탁주제조면허,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를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서(갑 제9호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9년 제0319호)를 작성해주었다.

각 서

1. 피고는 익산시 G에 있는 E의 주류제조면허를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2017. 10. 31.자로 반환하기로 한다.
2. 위 양조사의 제조·판매에 관한 모든 시설은 계약 종료시 현상대로 인계한다.
3. 피고는 E의 대리 운영자로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양조사의 면허와 시설에 손해를 가한 때(세무서에 2차 이상 경고를 받고 벌금을 낸 경우와,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면허를 반환한다.
4. 위 각서인은 신의와 성실로 양조사를 운영하며 인수 당시보다 영업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약 종료시 영업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인계·인수한다.
5. 위 양조사의 대외적인 행위는 제조, 판매에 애로가 없도록 원고가 적극 협조하고 월 3,000,000원을 매월 말일자로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반환기일인 2017. 10. 31.이 경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제2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양조장에 관한 탁주제조면허의 반환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주류제조면허의 반환과 관련하여 주세법에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를 허용하거나 양도양수를 전제로 한 규정이 없으나, 실제로 주류제조면허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면허 명의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면허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면허의 취소신청을 하고, 동시에 양수인은 새로이 면허신청(보충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사실상 양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면허관서에서는 보충면허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도인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양수인인 면허신청자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 주류면허에 관한 사무처리상의 관례이다.

이 사건 양조장에 관한 탁주제조면허의 반환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주류제조면허관서인 익산세무서장에게 별지1탁주제조면허의 취소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익산세무서장에게 탁주제조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양조장의 운영 및 그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고 건물수선을 위한 공사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양조장의 포장설비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기계기구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하였으므로, 반소청구를 통해 위 각 부속물들에 대하여 건물 임대차 종료로 인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게 부속물매수대금으로, 증축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액 18,994,320원 중 피고가 비용을 부담한 비율로 계산한 12,840,160원(=감정평가액 18,994,320원-원고 부담분 6,154,160원)과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가액 51,011,000원의 합계 63,851,160원(=12,840,160원+51,0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 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에 한하고, 이 경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에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인지 여부는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 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변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8086,18093 판결 등)

건물 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58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시설되어 용이하게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면 그 경제적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물건을 말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 증축 및 수선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양조장 운영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증축 또는 수선한 사실 및 그 비용으로 원고가 12,200,000원, 피고가 25,450,000원을 각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현재시가는 18,994,320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수선부분은 그 공사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부속물매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기계기구 교체·설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그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 일부를 교체 또는 추가 설치하였는데, 여기에는 냉장고, 사입용기(술독), 제성탱크, 주모용기, 보일러,

시루(밥솥), 반죽기, 제국기, 냉각기, 제성기, 포장설비 및 캠핑기, 날인기, 콤프레샤 및 콘베이어벨트 등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기계기구의 현재 시가는 합계 51,011,000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기계기구 중 냉장고, 술독, 제성탱크, 주모용기, 시루, 반죽기, 제국기, 냉각기, 제성기, 포장설비 및 캠핑기, 날인기, 콤프레샤 및 콘베이어벨트 등 대부분의 것들은 경제적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고 건물에서 분리할 수 있는 독립한 유체동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건물에 부속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조장 사업이 2010. 11.경 지역특화작목 가공품 생산시설 시범사업으로, 2011. 5.경 농산물이용 가공 상품화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89,400,000원(= 1차 30,400,000원 + 2차 59,000,000원)이 지원되었고, 위 금액이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증축·수선 또는 이 사건 기계기구의 교체나 추가 설치에 투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국고보조금 투입액이 이 사건 건물 및 기계기구의 시가 합계액을 초과함이 명백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추가 설치에 스스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피고 스스로 부담·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설령 교체 또는 추가 설치한 이 사건 기계기구 일부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지출함으로써 피고의 소유로 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체 또는 추가설치한 기계기구가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부속물매수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진, 판사 하정훈, 판사 오현순

별지1

탁주제조면허의 내용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제조장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제조할 주류의 종류

탁주

당초면허년월일

1993. 12. 7.

면허번호

면허발령기관

익산세무서

별지2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익산시 G 대 632㎡

2. 건물의 표시

익산시 [도로명주소 익산시]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 125.76㎡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창고 25.02㎡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공장 및 점포 213.55㎡

별지3

기계기구의 표시

품명	용도	규격 및 용량	수량	단가(원)	금원	비고
사입용기	탁주용	408.85 ℓ	14	30,000	420,000	
사입용기	·	521.57 ℓ	7	35,000	245,000	
담금조	·	831 ℓ	6	40,000	240,000	
제성탱크	·	2015.20 ℓ	1	100,000	100,000	
제성탱크	·	2236.20 ℓ	1	100,000	100,000	
주모용기			5	1,000	5,000	
보일러			1	1,000,000	1,000,000	
시루			1	800,000	800,000	
반죽기			1	500,000	500,000	
제국기			2	1,000,000	2,000,000	
냉각기			3	300,000	900,000	
모타펌프			2	70,000	140,000	
제성기			1	1,000,000	1,000,000	
포장설비	병입용	750ml검용	1	5,000,000	5,000,000	
캠핑기			1	500,000	500,000	
제국냉각기			1	700,000	700,000	
막걸리상자			300	1,000	300,000	
고무통			4	2,000	8,000	
날인기			1	500,000	500,000	
캠핑기			1	500,000	500,000	
폼프레사			1	100,000	100,000	
콘베아벨트			1	200,000	200,000	
실험기구	주정계 외		1	20,000	20,000	
책상			1	10,000	10,000	
의자			1	5,000	5,000	
컴퓨터			1	20,000	20,000	
복사기			1	10,000	10,000	
전화기			1	5,000	5,000	
카드기			1	1,000	1,000	
계					15,329,000	

1) 원고는, 망인에게 주류제조면허를 대여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유상계약'인데(민법 제618조), 갑

제4호증(각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양조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조장이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각서 제5항에 망인이 원고에게 사용·수익의 대가로 매월 3,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양조장 운영을 위한 탁주제조면허를 취득하게 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도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국고보조금 지급사업 중 1차 사업은 자부담 20%, 2차 사업은 자부담 50%를 예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자부담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예정된 사업비 총액이 모두 지출되었는지, 그중 자부담 예정금액을 실제로 피고가 부담·지출하였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스스로 부담한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